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14 선고 2016가단5014587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31 선고 2017나748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14 선고 2016가단5014587 판결

전 문

원고신용보증기금

피고1. A 영어조합법인

2. B

3. C

변론 종결 2016. 11. 23.

판결 선고 2016. 12. 14.

주 문

1. 피고 A영어조합법인,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836,337원 및 그 중 8,996,107원에 대하여 2015. 12. 30.부터 2016. 2. 24.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충청남도 서천군 D 전 233m²에 관하여,

가. 피고 A영어조합법인과 피고 C 사이에 2015. 9. 3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C은 피고 A영어조합법인에게 대전지방법원 장항등기소 2015. 9. 30. 접수 제13848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신용보증

1) 원고는 2014. 12. 11. 피고 A영어조합법인(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피고 회사의 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보증금액 169,983,000원, 보증기간 2014. 12. 11.부터 2019. 12. 10.까지로 각 정하여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으며, 당시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기업은행은 위와 같이 원고가 발생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014. 12. 26. 피고 회사에게 166,650,000원을 변제기 2016. 3. 18.로 정하여 대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

나. 부동산 매매

1) 피고 회사는 충청남도 서천군 D 전 233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5. 9. 30. 이를 금 1,750만 원에 피고 C에게 매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대전지방법원 장항등기소 2015. 9. 30. 접수 제13848호로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경료하여 주었다.

2) 2015년경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토지 외에 충남 서천군 E 소재 101호 창고 126m²(이하 '이 사건 창고'라고 한다)와 충남 서천군 F 소재 공장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공장건물 및 공장 내 기계 등을 전부 2015. 9. 17. G, H에게 매도하고 2015. 9. 22.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위 공장건물에는 2012. 9. 28. 채권최고액 948,000,000원,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 채무자 피고 B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고,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G 등에게 인수되었다).

3) 2012. 8. 17.경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은 10,485,000원이고, 이 사건 창고의 가액은 14,994,000원이다

다. 보증사고의 발생

1) 원고는 2015. 11. 4. 피고 회사의 대표자가 신용관리정보에 등록되어 피고 회사에 대하여도 보증부실사유가 발생하였다면서 중소기업은행에 부실통지를 하였다.

2) 원고는 2015. 12. 30. 기업은행에게 이 사건 대출의 원리금 56,226,695원(그 중 원금은 56,178,250원)을 대위변제하였다(이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라고 한다).

3)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위약금은 41,080원이다.

라. 한편,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한 신용보증채무 외에도 2015. 8.경 농협은행에 대하여 1억 9,800만 원, 기업은행에 대하여 7억 9,600만 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하여 1억 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1억 5,800만 원 등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피고 A영어조합법인, 피고 B: 자백간주

피고 C: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 6호증, 갑 제8호증의 1, 4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천군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중소기업은행 및 전국은행연합회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영어조합법인,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영어조합법인,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2,836,337원 및 그 중 8,996,107원에 대하여 2015. 12.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최종송달일인

2016. 2. 24.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2016. 10. 11. G가 원고에게 47,230,588원을 변제한 사실은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고, 원고는 위 돈을 이 사건 구상금채권의 원금에 충당하여 위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구상금채권의 잔존 원리금이 원금 8,996,107원 및 이에 대한 2015. 12. 30.부터의 지연손해금과 위 변제된 47,230,588원에 대한 확정손해금 3,799,150원(= 512,419원(= 47,230,588원 x 12% x 2015. 12. 30.부터 2016. 1. 31.까지 33일/365일, 원미만버림. 이하 같다) + 3,286,731원(= 47,230,588원 x 10% x 2016. 2. 1.부터 2016. 10. 11.까지 254일/365일)), 위약금 41,080원 남아있다고 주장하고, 위 피고들은 다투지 않고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채권자취소권의 성립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비록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아직 발생하지 않았으나, 당시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는 이미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어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있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일로부터 약 3개월 뒤인 2015. 12. 30. 원고의 대위변제로 인하여 구상금 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피고 회사의 무자력

2015. 9. 30. 피고 회사의 소극재산은 농협은행에 대한 채무 1억 9,800만 원 외에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채무 5,600만 원 상당(원고가 신용보증한 채무임. 그 외 중소기업은행을 채권자로 한 7억

9,600만 원 상당의 채권은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기 전에 G 등에게 먼저 매도한 충남 서천군 F 소재 공장건물을 담보로 한 채권으로 G 등에게 인수된 것으로 보인다) 합계 2억 원 이상인 반면, 적극재산은 이 사건 토지와 가액 14,994,000원 상당의 이 사건 창고 합계 25,479,000원(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10,485,000원으로 산정한 금액임. 피고 C이 매수한 1,750만 원을 그 가액으로 산정하더라도 적극재산의 합계는 32,494,000원으로 위 소극재산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에 불과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렇다면 피고 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행위는 원고 등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인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 C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C은, 이 사건 토지는 피고 C의 시조부 소유였고, 시부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사를 지어오다가 피고 B, 피고 C 부부에게 물려준 것인데, 피고 회사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 마음이 불편하여 2015. 9. 30. 시세보다 비싼 평당 25만 원으로 계산하여 피고 회사로부터 실제로 매수한 것인바, 피고 C은 선의라고 주장하나,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데 이는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인바, 을마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 명의의 계좌로 C 명의 계좌에서 1,750만 원이 송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송금일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후인 2015. 10. 4.이고, 피고 C이 피고 B의 배우자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C이 선의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한소희